

**보건부**

국립 보건 감시원

**1999년 9월 23일 결의안 No. 481 (\*)**

국립보건감시원의 집행이사회는 1999년 9월 22일에 개최된 회의에서, 1999년 4월 26일 ANVS No. 1 결의안에서 승인된 내부규정의 제 72 조에 항목 III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, 그리고

화장품의 미생물학적 관리를 위한 파라미터 설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;

Mercosur(남미공동시장)-Res. GMC 5 1/98에 따라 조화된 제도와 호환되는 국가 규정을 제정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;

위생감시 및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제품의 관리행위를 개선할 필요성을 고려하여;

위생감시가 건강에 관한 문제점을 예방하고, 표준 및 업데이트를 승인하고,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, 이들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;

다음 결의안을 채택하며, 최고 경영자인 본인이 이를 공표할 할 것을 결정한다.

제 1 조 개인위생제품, 화장품 및 향수에 대한 미생물학적 관리를 위한 파라미터는 본 결의안의 부록에 따라 설정한다.

제 2 조 본 결의안은 공표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.

부록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**적용 부위 및 연령** | **허용 한계** |
| **유형-I** | 어린이용 제품  눈 부위의 제품  점막과 접촉하는 제품 | 1. 총 호기성 중온성 미생물 수, 102 CFU/g 또는 ml 이하   최대치 제한: 5 x 102 UFC/g 또는 ml   1. 1g 또는 1ml에 녹농균 (*pseudomonas aeruginosaco*)이 없음; 2. 1g 또는 1ml에 황색 포도상구균(*staphylococcus aureus*) 이 없음; 3. 1g 또는 1ml에 총 및 대변대장균(total and fecal coliforms)이 없음; 4. 1g에 아황산염 환원 클로스트리디아가 없음 (활석 전용) |
| **유형-II** | 미생물 오염에 민감한 기타 화장품 | 1. 총 호기성 중온성 미생물 수, 103 CFU/g 또는 ml 이하;   최대치 제한: 5 x 103 CFU/g 또는 ml   1. 1g 또는 1ml에 녹농균 (*pseudomonas aeruginosaco*)이 없음; 2. 1g 또는 1ml에 황색 포도상구균(*staphylococcus aureus*) 이 없음; 3. 1g 또는 1ml에 총 및 대변대장균(total and fecal coliforms)이 없음; 4. 1g에 아황산염 환원 클로스트리디아가 없음(활석 전용). |

(\*)D.O.n5 185-E, 27-9-99, 섹션 1, p. 29에 원본 잘못 수록되어 재공표